|  |  |  |
| --- | --- | --- |
|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87호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관리방법>(재정부령 제18호)에 대한 개정안이 재정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샤오제(肖捷)  　　2017년 7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조달 당사자의 조달 행위를 규율하고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정부조달 입찰•투찰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이하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정부조달 화물•서비스(이하 '화물•서비스'로 약칭) 입찰•투찰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 받는다.  제3조 화물•서비스 입찰은 공개입찰 및 초청입찰로 구분한다.  공개입찰이라 함은, 조달자가 법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의 방식으로 불특정의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는 조달방식을 지칭한다.  초청입찰이라 함은, 조달자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들 중 3명 이상의 공급자를 무작위 선출하여 입찰초청서의 방식으로 입찰에 초청하는 조달방식을 지칭한다.  제4조 지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성(省)급,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设区的市)급, 현(縣)급의 공개입찰 액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조달자는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후진지역 및 소수민족지역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조달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 조달자는 행정기관•사업기관내부통제규범의 요구에 따라 본 기관의 정부조달내부통제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예산 및 실시계획 작성, 조달수요 확정, 조달 활동 조직, 계약이행 검수, 질의 응답, 신고 처리 및 감독검사 협조 등 중점 단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공급자에게 증정품•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조달과 무관한 기타 상품•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조달자는 재정부가 제정한 <정부조달품목 분류목록>에 따라 조달 프로젝트의 속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정부조달품목 분류목록>에 따라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조달 프로젝트의 실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 조달자가 조달대행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입찰하는 경우 조달대행기구는 조달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조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조달대행기구와 그 분지기구(分支機構)는 그가 대리하는 조달 프로젝트에 투찰하거나 대리투찰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가 대리하는 조달 플로젝트의 입찰참가자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투찰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장 입찰  제9조 집중조달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조달자가 스스로 입찰하거나 조달대행기구에 위탁하여 위탁 범위 내에서 대리입찰하게 할 수도 있다.  스스로 입찰 활동을 조직 및 전개하는 조달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입찰안내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달 프로젝트의 전문성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조달자는 조달목적물의 시장 기술•서비스 수준, 공급, 가격 등 상황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조사 상황, 자산배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조달수요를 과학적•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가격을 추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달수요는 온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조달목적물이 실현해야 하는 기능 또는 목표, 정부조달 정책 실행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  (2) 조달목적물에 구현되어야 하는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또는 기타 표준•규범;  (3)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안전, 기술규격, 물리특성 등 요구사항;  (4) 조달목적물의 수량, 조달 프로젝트 인도 또는 실시 시간과 장소;  (5)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기준, 기한, 효율 등 요구사항;  (6) 조달목적물 검수 기준;  (7) 목적물에 대한 기타 기술, 서비스 등 요구사항.  제12조 조달자는 가격 추산 상황에 근거하여 조달예산 한도 내에서 최고 제한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최저 제한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공개입찰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달자 및 그가 의뢰한 조달대행기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2) 조달 프로젝트의 명칭, 예산금액 (최고 제한가를 설정한 경우 최고 제한가도 공고하여야 함);  (3) 조달자의 조달수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 요구사항;  (5) 입찰안내문서 수령 기한, 장소, 방식 및 입찰안내문서 판매가격;  (6) 공고기한;  (7) 투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8) 조달 프로젝트 연락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제14조 초청입찰 방식을 취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3명 이상의 공급자를 무작위로 선출하여 입찰초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자격예심공고를 발표하여 모집;  (2)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이하 '재정부서'로 약칭)가 구축한 공급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출.  (3) 조달자의 서면 추천.  전항 제(1)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안내문서에 기재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잠재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예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명단을 추출하는 경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자 후보 수가 무작위로 선출하고자 하는 공급자 수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무작위 선출이라 함은 추첨 등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방식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작위로 공급자 선출 시 2명 이상의 조달자 업무인력이 현장에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서면기록을 작성하여 조달문서와 같이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입찰초청서는 모든 초청 공급자에게 동시 발송되어야 한다.  제15조 자격예심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방법 제13조 제(1)호 ~ 제(4)호, 제(6)호, 제(8)호의 내용;  (2) 자격예심안내문서 수령 기한, 장소, 방식;  (3) 자격예심 신청문서 제출 마감시간, 장소 및 자격예심 일자.  제16조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의 공고기한은 5일(근무일 기준)로 한다. 공고 내용은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된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공고기한은 성급 이상 재정부서에 의해 지정된 매체가 최초로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의 등록자본, 자산총액, 영업수입, 종업원, 이윤, 납세액 등 규모적인 조건을 자격 요구사항으로 설정하거나 평가심사요소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수입화물을 제외하고 생산업체의 수권, 승낙, 증명, 보증 등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여 입찰참가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 또는 입찰초청서에 규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한은 입찰공고•자격예심공고 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근무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공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제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공고해야 한다.  공개입찰에서 자격예심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자격예심공고를 통합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문서는 자격예심을 통과한 모든 공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 실시 요구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 또는 입찰초청서에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참여 허용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참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의 특성 및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입찰안내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안내문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참가 초청;  (2) 입찰참가자 숙지사항(입찰서의 밀봉•서명•날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  (3) 입찰참가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격증명문서•자금신용증명문서;  (4) 정부조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달목적물이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과 입찰참가자가 제공해야 하는 증명자료;  (5) 입찰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가격제안 요구사항, 입찰보증금 납부•반환방식 및 입찰보증금 불반환 사유;  (6) 조달 프로젝트 예산금액, 최고 제한가를 설정하는 경우 최고 제한가 공개;  (7) 조달 프로젝트의 기술규격, 수량, 서비스 기준, 검수 등 요구사항(첨부문서, 설계도 등 포함);  (8)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문서;  (9) 화물•서비스 제공시간, 장소, 방식;  (10) 대금 지급방식, 시간, 조건;  (11) 입찰평가 방법, 평가기준 및 투찰 무효 사유;  (12) 투찰 유효기간;  (13) 투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14) 조달대행기구 대행비용 수취기준 및 방식;  (15) 입찰참가자 신용정보 조회경로 및 마감시간,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증거 보관방식, 신용정보 사용규칙 등;  (16)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이탈을 허용치 아니하는 실질적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하여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프로젝트의 특성과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격예심안내문서는 다음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예심 참가 초청;  (2) 신청인 숙지사항;  (3) 신청인 자격 요구사항;  (4) 자격심사 기준 및 방법;  (5)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자격예심신청서의 내용과 양식;  (6) 자격예심신청서 제출바식, 마감시간, 장소 및 자격심사 실시일자;  (7) 신청인 신용정보 조회경로 및 마감시간,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증거 보관방식, 신용정보 사용규칙 등 내용;  (8)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자격예심안내문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2조 서면방식만으로는 조달수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하거나 조달수요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비롯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에게 샘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입찰참가자에게 샘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샘플 제작 기준과 요구사항, 관련 검사보고서 제출 여부, 샘플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입찰안내문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검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미낙찰자가 제공한 샘플은 조달 활동이 끝난 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미낙찰자의 동의를 득한 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제공한 샘플은 입찰안내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봉인한 후 계약이행 검수 시 참고한다.  제23조 투찰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기산한다. 입찰서에서 승낙한 투찰 유효기간은 입찰안내문서에 기재된 투찰 유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투찰 유효기간 내에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취소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입찰안내문서 판매가격은 제작•우편송달 원가 보존의 원칙에 따라 책정하여야 하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책정하거나 입찰조달 금액에 의거하여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의 내용이 법률•행정법규•강제성표준•정부조달 정책에 위배되거나 공개투명 원칙, 공평경쟁 원칙, 공정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전항 규정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어 잠재 입찰참가자의 투찰 결과 또는 자격예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 또는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안내문서 제공기한이 만료된 후 입찰안내문서를 이미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를 조직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하거나 개찰 전 질의응답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장답사를 진행하거나 질의응답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찰안내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입찰안내문서 제공기한이 만료된 후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모든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제27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이미 발송된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 입찰초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해명 또는 수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조달목적물과 자격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해명 또는 수정은 기존 공고를 발표한 매체에 해명공고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은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 입찰초청서의 구성부분이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이 입찰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투찰이 마감되기 최소 15일 전에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모든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15일 미만일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서 제출 마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해명내용 또는 수정내용이 자격예심신청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신청서 제출이 마감되기 최소 3일 전에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3일 미만일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자격예심신청서 제출 마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제28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 및 관련 인원은 투찰이 마감되기 전까지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의 명칭, 수량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입찰•투찰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공고, 자격예심공고를 발표하거나 입찰초청서를 발송한 후 중대한 변고로 조달 임무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활동을 무단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입찰을 중단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지체없이 기존 공고를 발표한 매체에 중단 공고를 발표하고 입찰안내문서, 자격예심안내문서를 수령하였거나 초청을 받은 잠재 입찰참가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실시상황과 조달 임무 취소사유를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안내문서 비용 또는 입찰보증금을 이미 수취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조달 활동 중단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가 수취한 입찰안내문서 비용, 입찰보증금과 이미 발생한 은행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투찰  제30조 투찰자라 함은 입찰에 응하여 투찰 경쟁에 참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을 지칭한다.  제31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조달 프로젝트에서 동일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는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동일 계약의 입찰에 투찰한 경우 자격심사와 부합성 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입찰평가에 참여시킨다.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자가 위탁한 입찰평가위원회가 입찰안내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입찰평가에 참여하는 1명의 입찰참가자를 확정한다. 입찰안내문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무작위 선출 방식으로 확정하며 기타 투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조달 프로젝트에서 동일 브랜드 제품을 제공하며 자격심사와 부합성 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동일 계약의 입찰에 투찰한 경우 동일 입찰참가자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동일 브랜드로 투찰한 입찰참가자 중 평가에서 최고점을 득한 자가 낙찰자로 추천받을 자격을 획득한다. 같은 점수를 득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자가 위임한 입찰평가위원회가 입찰안내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확정한 1명의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추천받을 자격을 획득하고 입찰안내문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무작위 선출 방식으로 확정하며 동일 브랜드의 기타 입찰참가자는 낙찰 후보에서 제외된다.  복수의 품목을 조달하는 조달 프로젝트의 조달자는 조달 프로젝트의 기술구성, 제품가격 비중 등에 근거하여 핵심품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입찰안내문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핵심품목의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 위 두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문서의 요구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입찰안내문서에 제시한 요구와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제33조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문서에서 요구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를 밀봉하여 투찰장소로 송달해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서를 제출받은 후 입찰서 송달시간과 밀봉 상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수령확인 사인을 하여 접수 및 보관하고 입찰참가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개찰 전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찰서가 기한이 경과된 후에 송달되었거나 입찰안내문서의 요구에 따라 밀봉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을 경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34조 입찰참가자는 투찰 마감시간 전에 그가 제출한 입찰서를 보충•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서면으로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충•수정 내용은 입찰안내문서의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밀봉한 후 입찰서의 구성부분이 된다.  제35조 입찰참가자가 입찰안내문서의 규정과 조달 프로젝트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낙찰받은 조달 프로젝트의 비주체적•비핵심적 업무를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에 하청업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하청업체는 해당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재하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입찰참가자는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악의적 담합행위 또는 기타 입찰참가자를 방해하는 경쟁행위를 하거나 조달자 또는 기타 입찰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찰평가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가 상기 행위를 행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그의 투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을 본급 재정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담합투찰로 간주하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1) 복수의 입찰참가자의 입찰서가 동일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  (2)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투찰 업무를 동일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3) 복수의 입찰참가자의 일찰서상 프로젝트 관리담당자 또는 연락담당자가 동일 인물로 기재된 경우;  (4) 복수의 입찰참가자의 입찰서가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거나 투찰가격이 규칙적인 차이를 보일 경우;  (5) 복수의 입찰참가자의 입찰서가 서로 혼합포장된 경우;  (6) 복수의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이 동일 업체 또는 개인의 계좌에서 전출된 경우.  제38조 입찰참가자가 투찰 마감시간 전에 그가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의 서면철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이미 수취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적시 반환이 이뤄질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낙찰통보서 발송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미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을 반환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중국인민은행 동기 대출 기준금리의 120%를 기준으로 자금점용기간초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적시 반환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개찰, 입찰평가  제39조 개찰은 입찰안내문서에서 확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과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어야 한다. 개찰장소는 입찰안내문서에서 사전 확정한 장소이어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개찰•입찰평가 현장 활동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한다. 녹음•녹화는 뚜렷하고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녹음•녹화 자료는 조달문서와 같이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개찰은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가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를 초청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개찰 활동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개찰 시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자가 선발한 대표가 입찰서의 밀봉 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의 업무인력이 입찰참가자들의 면전에서 개봉하여 입찰참가자의 명칭, 투찰가격과 입찰안내문서에서 규정한 기타 발표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개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개찰 과정은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가 책임지고 기록하여야 하며 개찰에 참가한 각 입찰참가자 대표와 관련 업무인력이 확인서명한 후 조달문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 대표는 개찰 과정과 개찰기록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조달자•조달대행기구의 관련 업무인력에게 회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석에서 질의하거나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참가자 대표의 질의 또는 회피신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개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개찰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공개입찰 액수 기준 이상의 조달 프로젝트에서 투찰이 마감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이거나 자격심사 또는 부합성 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조달 임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찰안내문서에 불합리적인 조항이 들어있거나 입찰 절차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문서에 불합리적인 조항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입찰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나 기타 조달방식을 통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 조달자는 법에 의거하여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공개입찰 조달 프레젝트의 개찰이 끝난 후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법에의거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입찰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평가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하며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평심전문가의 신분과 조달자 대표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평심전문가의 정부조달 활동에서의 직책 이행 상황을 기록하며 관련 위법•범칙행위를 재정부서에 보고한다.  (2) 입찰평가 기율을 발표한다.  (3) 입찰참가자 명단을 공개하고 평가전문가에게 회피 사유를 고지한다.  (4) 입찰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찰평가팀장을 선출한다. 조달자 대표는 팀장을 맡을 수 없다.  (5) 입찰평가 기간에 필요한 통신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입찰평가 활동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6) 입찰평가위원회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관련 정책•법규 및 입찰안내문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7) 입찰평가 질서를 유지시키고 입찰안내문서에 규정한 입찰평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조달자 대표 및 평심전문가의 편향적 발언 또는 위법•범칙행위를 적시에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8) 입찰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이 방법 제64조에 규정한 정황이 있을 경우 입찰평가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입찰평가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한다.  (9) 평가심사 업무가 완결된 후 규정에 따라 평심전문가에게 용역보수와 타지평심출장비를 지급한다. 평심용역보수를 평심전문가 이외의 기타 제3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입찰평가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조달자는 입찰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배경 및 조달수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설명 내용이 차별적•편향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거나 입찰안내문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설명 시 서면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문서와 같이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입찰평가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찰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직책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1) 입찰서가 입찰안내문서상의 상업•기술 등 실질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사 및 평가한다.  (2)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서의 관련 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을 요구한다.  (3) 입찰서에 대한 비교 및 평가를 실시한다.  (4) 낙찰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조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직접적으로 확정한다.  (5)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를 조달자•조달대행기구 또는 관련부서에 보고한다.  제47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조달자 대표와 평심전문가로 구성된다. 5명 이상 홀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평심전문가의 비중이 2/3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조달 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 홀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조달예산 금액이 1,000만위안 이상인 경우;  (2) 기술이 복잡한 경우;  (3)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이 방법 4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심전문가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입찰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오직 조달자 대표의 신분으로만 입찰평가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대행기구의 직원은 본 기구가 대행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입찰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입찰평가 결과를 공고하기 전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48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구축한 정부조달 평심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방식으로 평심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한 관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적합한 전문가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조달자는 예산주관기구의 동의를 득한 후 해당 전문 영역의 평심전문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49조 입찰평가 과정에서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결석, 회피 또는 건강 이상 등 특수사유로 인해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법에 따라 구성원 수를 보충한 후 입찰평가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교체된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입찰평가 의견은 무효로 처리한다.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 수의 적시 보충이 불가능한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평가 활동을 일시중지하고 모든 입찰서와 개찰•입찰평가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입찰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입찰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입찰평가위원회의 입찰평가 의견은 무효로 처리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입찰평가위원회 변경•재구성 상황을 기록한 후 조달문서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적격 입찰참가자의 입찰서에 대한 부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입찰안내문서상의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 입찰서에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동일 사항에 대한 서술이 불일치한 내용 또는 현저한 문자오류,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필요한 해명, 설명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의 해명, 설명 또는 보정은 서면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인을 날인하거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대표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입찰참가자의 해명, 설명 또는 보정은 입찰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안내문서에 규정된 입찰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라 부합성 심사를 통과한 입찰서에 대한 상업•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비교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입찰평가방법은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구분한다.  제54조 최저가낙찰제라 함은 입찰서가 입찰안내문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참가자를 낙찰 후보로 선정하는 입찰평가 방법을 지칭한다.  기술, 서비스 등 기준이 통일화되어 있는 화물•서비스 조달 프로젝트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입찰평가 시 산술 수정 및 정부조달 정책 실행에 따라 가격을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에 대한 그 어떠한 조정도 금지한다.  제55조 종합심사낙찰제라 함은 입찰서가 입찰안내문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평가심사요소 계량화 지표에 따라 실시된 평가심사에서 최고점을 득한 입찰참가자를 낙찰 후보로 선정하는 입찰평가 방법을 지칭한다.  평가심사요소의 설정은 입찰참가자가 제공하는 화물•서비스의 품질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투찰가격, 기술 또는 서비스 수준, 계약이행 능력, 판매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자격조건을 평가심사요소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평가심사요소는 입찰안내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심사요소는 세분화•계량화되고 해당 상업조건 및 조달수요와 대응되어야 한다. 상업조건 및 조달수요의 지표가 구간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평가심사요소는 해당 구간까지 계량화 해야 하며 각 구간과 대응되는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입찰평가 시 입찰평가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각 입찰참가자의 입찰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각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취합해야 한다.  화물 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가격 점수치가 총 점수치의 30%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서비스 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가격 점수치가 총 점수치의 1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가격책정기준을 집행하거나 고정가격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 가격을 평감심사요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격점수는 저가우선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입찰안내문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가를 입찰평가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점수를 만점으로 한다. 기타 입찰참가자의 가격점수는 통일적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입찰가격 점수 = (입찰평가기준가격 / 투찰가격) × 100  입찰평가 총점수 = F1×A1＋F2×A2＋……＋Fn×An  F1、F2……Fn은 각 평가심사요소 항목의 점수를 뜻한다.  A1、A2、……An은 각 평가심사요소 항목이 차지하는 가중치(A1＋A2＋……＋An＝1)를 뜻한다.  입찰평가 시 최고 투찰가 및 최저 투찰가를 제외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부조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의 가격으로 입찰평가기준가격 및 투찰가격을 계산한다.  제56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낮은 투찰가격 순으로 입찰평가 결과를 배열한다. 투찰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병렬한다. 입찰서가 입찰안내문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참가자를 낙찰 후보 1순위로 정한다.  제57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높은 점수 순으로 입찰평가 결과를 배열한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 낮은 투찰가격 순으로 배열한다. 점수와 투찰가격 모두 동일한 경우 병렬한다. 입찰서가 입찰안내문서의 모든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평가심사요소 계량화 지표에 따라 실시된 평가심사에서 최고점을 득한 입찰참가자를 낙찰 후보로 1순위로 정한다.  제58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전체 구성원이 서명한 입찰평가 원시기록과 입찰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입찰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를 게시한 매체의 명칭, 개찰 일자와 장소;  (2) 입찰참가자 명단과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명단;  (3) 입찰평가 방법과 기준;  (4) 개찰기록과 입찰평가 상황 및 관련 설명, 무효 입찰참가자 명단 및 무효 사유;  (5) 입찰평가 결과, 확정한 낙찰 후보 명단 또는 조달자의 위탁하에 직접적으로 확정한 낙찰자;  (6) 일찰평가 과정에서 입찰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입찰참가자의 해명•설명 또는 보정, 입찰위원회 구성원 교체 상황 등을 포함하여 설명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59조 입찰서에 제안가격이 불일치하게 기재된 경우 입찰안내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다.  (1) 입찰서상 개찰일람표(제안가격표)의 내용이 입찰서상 해당 내용과 불일치하게 기재된 경우 개찰일람표(제안가격표)를 기준으로 한다.  (2) 문자표기금액과 숫자표기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문자표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단가의 소수점 또는 백분율 위치 표기가 현저히 잘못된 경우 개찰일람표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단가를 수정한다.  (4) 총 가격 금액이 단가를 취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단가 금액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상기 불일치 상황이 두 종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수정한다. 수정 후의 제안가격은 이 방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확인을 거친 후 구속력을 발생하며 입찰참가자가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이 부합성 심사를 통과한 기타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음으로써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성실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입찰평가 현장에서 합립적인 시간 내에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제안가격의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그 투찰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제61조 공동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상이한 의견을 가진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입찰평가보고서에 본인의 상이한 의견과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입찰평가위원회 및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찰평가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입찰평가가 완결되지 전 까지의 기간 내에 사적으로 입찰참가자와 접촉하는 행위;  (2)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서와 불일치한 해명 또는 설명을 접수하는 행위(이 방법 제51조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  (3) 입찰평가 기율을 어기고 편향적 의견을 발표하거나 조달자에게 편향적 의견을 구하는 행위;  (4)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주관적 평가심사요소의 평점에 대하여 협의하는 행위;  (5) 입찰평가 과정에서 직무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입찰평가 절차의 정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입찰평가 자료를 기록, 복제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7) 기타 입찰평가 기율 위반행위.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전항 제(1)호 ~ 제(5)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그의 평가심사 의견은 무효로 처리하며 해당 구성원에게 평가심사 용역보수 및 타지평심출장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1) 입찰안내문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찰안내문서의 요구에 따라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안내문서에 규정한 자격 요구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제안가격이 입찰안내문서에 규정한 예산금액 또는 최고 제한가를 초과한 경우;  (5) 입찰서에 조달자가 수락할 수 없는 부가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6) 법률•법규 및 입찰안내문서에 규정한 기타 무효 사유.  제64조 입찰평가 결과 취합 완료 후 그 누구도 입찰평가 결과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점수 취합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경우;  (2) 항목별 평점이 평점기준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객관적 평가심사요소에 대한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평점이 불일치한 경우;  (4) 입찰평가위원회에 의해 평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입찰평가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검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입찰평가위원회는 즉석에서 입찰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입찰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평가보고서 서명이 끝난 후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가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기존 입찰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다시 실시한 평가심사에서 입찰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기존 입찰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시 실시한 평가심사에서 입찰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안내문서에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내용,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입찰평가 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안내문서의 내용이 국가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입찰평가 업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와 해당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기록을 남겨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입찰안내문서를 수정하고 입찰 활동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  제66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비밀유지가 철저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입찰평가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달자 대표, 입찰평가 현장 조직자를 제외하고 조달자의 기타 업무인력과 입찰평가 업무와 무관한 자는 입찰평가 현장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인원은 입찰평가 진행상황 및 입찰평가 과정에서 알게된 국가기밀•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67조 입찰평가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평가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입찰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본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조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방법 제62조 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3) 입찰평가위원회 및 그 구성원의 독립적인 입찰평가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우;  (4)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제75조에 규정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범칙행위를 행한 기존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재구성되는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5장 낙찰 및 계약  제68조 입찰대행기구는 입찰평가 완결 후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입찰평가보고서를 조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달자는 입찰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문일 기준) 내에 입찰평가보고서에서 확정한 낙찰 후보 명단의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낙찰 후보가 공동순위에 있을 경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가 입찰평가위원회에 위탁하여 입찰안내문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며 입찰안내문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확정한다.  조달자자 스스로 조달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입찰평가 완결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낙찰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조달자가 입찰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입찰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후보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합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을 경우 입찰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순서에 따라 1순위를 차지한 낙찰 후보가 낙찰자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9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를 통해 낙찰 결과를 공고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입찰안내문서도 낙찰 결과와 같이 공고해야 한다.  낙찰 결과 공고문에는 조달자 및 그가 위탁한 조달대행기구의 명칭•주소•연락방식, 프로젝트 명칭 및 프로젝트 번호, 낙찰자의 명칭•주소 및 낙찰금액, 주요 낙찰 목적물의 명칭•규격모델•수량•단가•서비스 요구사항, 낙찰 공고 기한 및 평심전문가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찰 공고 기한은 1일(근무일 기준)이다.  초청입찰 조달자가 서면추천 방식으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잠재 입찰참가자를 추출하는 경우 추천받은 모든 공급자 명단과 추천이유를 낙찰 결과와 같이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낙찰 결과를 공고함과 동시에 조달자 또는 조달대행기구는 낙찰자에게 낙찰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입찰참가자에게는 불통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종함심사낙찰제를 적용한 경우 미낙찰자에게 그의 평가심사 점수와 순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70조 낙찰통보서 발송 후 조달자는 불법으로 낙찰 결과를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낙찰자는 정당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조달자는 낙찰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입찰안내문서 및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안내문서에서 확정한 사항과 낙찰자의 입찰서에 대하여 실질적 수정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조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낙찰자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정부조달계약은 조달자와 낙찰자의 명칭•주소,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 또는 보수, 이행기한 및 장소와 방식, 검수 요구사항, 위약책임, 분쟁 해결방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3조 조달자와 낙찰자는 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조달계약의 이행, 위약책임 및 분쟁 해결방식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적용받는다.  제74조 조달자는 적시에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타 입찰참가자 또는 제3자 기구를 초청하여 검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검수에 참여한 입찰참가자 또는 제3자 기구의 의견은 검수서의 참고자료로서 같이 철하여 보관한다.  제75조 조달자는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조달계약의 약정에 따라 조달자금을 낙찰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조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조달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의 위약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76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는 입찰조달 기록파일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구축하고 제반 조달 활동의 조달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77조 조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경고를 준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리고 통보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수요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규정된 시간 내에 낙찰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체결 조건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낙찰자에게 제시한 경우.  제78조 조달자•조달대행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경고를 준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리고 통보한다. 조달대행기구가 위법소득을 취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3배의 범위 내에서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위법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방법 제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최저 제한가를 설정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자격예심 또는 자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찰안내문서의 판매가격을 확정함에 있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개찰•입찰평가 활동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지 아니한 경우;  (6) 입찰 활동을 무단 중단한 경우;  (7) 개찰을 진행하고 입찰평가를 조직함에 있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평가심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입찰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입찰평가를 실시한 경우;  (10) 입찰안내문서를 수령한 잠재 입찰참가자의 명칭, 수량 또는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입찰•투찰 관련 상황을 개찰 전에 누설한 경우;  (11) 조달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2)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경우.  제79조 이 방법 제77조, 제78조에 규정한 위법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하였고 시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여전히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0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81조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이 방법 제62조에 열거한 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재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경고를 주고 그의 불량행위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82조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쟁정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등 위법•범칙 행위를 행하는 경우 <정부조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83조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전자입찰•투찰, 정부조달 화물 중의 전기기계제품 입찰•투찰에 관한 특수 사항은 재정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84조 이 방법에서 예산주관기구라 함은 부서예산 작성 직책을 담당하며 본급 재정부서에 예산을 신고하는 국가기관, 사업기관 및 단체조직을 지칭한다.  제85조 이 방법에서 일수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당일은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국가에서 정한 법정(法定)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86조 이 방법에서 '이상', '이하', '내', '이내'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며, '미만'이라 함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7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상세한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8조 이 방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04년 8월 11일에 발표한 <정부조달 화물•서비스 입찰•투찰 관리방법>(재정부령 제18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财政部令第87号  　　财政部对《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财政部令第18号）进行了修订，修订后的《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已经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10月1日起施行。  　　部长 肖捷  　　2017年7月11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政府采购当事人的采购行为，加强对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活动的监督管理，维护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政府采购招标投标活动当事人的合法权益，依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以下简称政府采购法实施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政府采购货物和服务（以下简称货物服务）招标投标活动。  　　第三条 货物服务招标分为公开招标和邀请招标。  　　公开招标，是指采购人依法以招标公告的方式邀请非特定的供应商参加投标的采购方式。  　　邀请招标，是指采购人依法从符合相应资格条件的供应商中随机抽取3家以上供应商，并以投标邀请书的方式邀请其参加投标的采购方式。  　　第四条 属于地方预算的政府采购项目,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可以确定分别适用于本行政区域省级、设区的市级、县级公开招标数额标准。  第五条 采购人应当在货物服务招标投标活动中落实节约能源、保护环境、扶持不发达地区和少数民族地区、促进中小企业发展等政府采购政策。  　　第六条 采购人应当按照行政事业单位内部控制规范要求，建立健全本单位政府采购内部控制制度，在编制政府采购预算和实施计划、确定采购需求、组织采购活动、履约验收、答复询问质疑、配合投诉处理及监督检查等重点环节加强内部控制管理。  　　采购人不得向供应商索要或者接受其给予的赠品、回扣或者与采购无关的其他商品、服务。  　　第七条 采购人应当按照财政部制定的《政府采购品目分类目录》确定采购项目属性。按照《政府采购品目分类目录》无法确定的，按照有利于采购项目实施的原则确定。  　　第八条 采购人委托采购代理机构代理招标的，采购代理机构应当在采购人委托的范围内依法开展采购活动。  　　采购代理机构及其分支机构不得在所代理的采购项目中投标或者代理投标，不得为所代理的采购项目的投标人参加本项目提供投标咨询。  第二章　招　标  　　第九条 未纳入集中采购目录的政府采购项目，采购人可以自行招标，也可以委托采购代理机构在委托的范围内代理招标。  　　采购人自行组织开展招标活动的，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编制招标文件、组织招标的能力和条件；  　　（二）有与采购项目专业性相适应的专业人员。  　　第十条 采购人应当对采购标的的市场技术或者服务水平、供应、价格等情况进行市场调查，根据调查情况、资产配置标准等科学、合理地确定采购需求，进行价格测算。  　　第十一条 采购需求应当完整、明确，包括以下内容：  　　（一）采购标的需实现的功能或者目标，以及为落实政府采购政策需满足的要求；  　　（二）采购标的需执行的国家相关标准、行业标准、地方标准或者其他标准、规范；  　　（三）采购标的需满足的质量、安全、技术规格、物理特性等要求；  　　（四）采购标的的数量、采购项目交付或者实施的时间和地点；  　　（五）采购标的需满足的服务标准、期限、效率等要求；  　　（六）采购标的的验收标准；  　　（七）采购标的的其他技术、服务等要求。  　　第十二条 采购人根据价格测算情况，可以在采购预算额度内合理设定最高限价，但不得设定最低限价。  　　第十三条 公开招标公告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采购人及其委托的采购代理机构的名称、地址和联系方法；  　　（二）采购项目的名称、预算金额，设定最高限价的，还应当公开最高限价；  　　（三）采购人的采购需求；  　　（四）投标人的资格要求；  　　（五）获取招标文件的时间期限、地点、方式及招标文件售价；  　　（六）公告期限；  　　（七）投标截止时间、开标时间及地点；  　　（八）采购项目联系人姓名和电话。  　　第十四条 采用邀请招标方式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通过以下方式产生符合资格条件的供应商名单，并从中随机抽取3家以上供应商向其发出投标邀请书：  　　（一）发布资格预审公告征集；  　　（二）从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以下简称财政部门）建立的供应商库中选取；  　　（三）采购人书面推荐。  　　采用前款第一项方式产生符合资格条件供应商名单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资格预审文件载明的标准和方法，对潜在投标人进行资格预审。  　　采用第一款第二项或者第三项方式产生符合资格条件供应商名单的，备选的符合资格条件供应商总数不得少于拟随机抽取供应商总数的两倍。  　　随机抽取是指通过抽签等能够保证所有符合资格条件供应商机会均等的方式选定供应商。随机抽取供应商时，应当有不少于两名采购人工作人员在场监督，并形成书面记录，随采购文件一并存档。  　　投标邀请书应当同时向所有受邀请的供应商发出。  　　第十五条 资格预审公告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本办法第十三条第一至四项、第六项和第八项内容；  　　（二）获取资格预审文件的时间期限、地点、方式；  　　（三）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截止时间、地点及资格预审日期。  　　第十六条 招标公告、资格预审公告的公告期限为5个工作日。公告内容应当以省级以上财政部门指定媒体发布的公告为准。公告期限自省级以上财政部门指定媒体最先发布公告之日起算。  　　第十七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将投标人的注册资本、资产总额、营业收入、从业人员、利润、纳税额等规模条件作为资格要求或者评审因素，也不得通过将除进口货物以外的生产厂家授权、承诺、证明、背书等作为资格要求，对投标人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  　　第十八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按照招标公告、资格预审公告或者投标邀请书规定的时间、地点提供招标文件或者资格预审文件，提供期限自招标公告、资格预审公告发布之日起计算不得少于5个工作日。提供期限届满后，获取招标文件或者资格预审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3家的，可以顺延提供期限，并予公告。  　　公开招标进行资格预审的，招标公告和资格预审公告可以合并发布，招标文件应当向所有通过资格预审的供应商提供。  　　第十九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根据采购项目的实施要求，在招标公告、资格预审公告或者投标邀请书中载明是否接受联合体投标。如未载明，不得拒绝联合体投标。  　　第二十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根据采购项目的特点和采购需求编制招标文件。招标文件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投标邀请；  　　（二）投标人须知（包括投标文件的密封、签署、盖章要求等）；  　　（三）投标人应当提交的资格、资信证明文件；  　　（四）为落实政府采购政策，采购标的需满足的要求，以及投标人须提供的证明材料；  　　（五）投标文件编制要求、投标报价要求和投标保证金交纳、退还方式以及不予退还投标保证金的情形；  　　（六）采购项目预算金额，设定最高限价的，还应当公开最高限价；  　　（七）采购项目的技术规格、数量、服务标准、验收等要求，包括附件、图纸等；  　　（八）拟签订的合同文本；  　　（九）货物、服务提供的时间、地点、方式；  　　（十）采购资金的支付方式、时间、条件；  　　（十一）评标方法、评标标准和投标无效情形；  　　（十二）投标有效期；  　　（十三）投标截止时间、开标时间及地点；  　　（十四）采购代理机构代理费用的收取标准和方式；  　　（十五）投标人信用信息查询渠道及截止时点、信用信息查询记录和证据留存的具体方式、信用信息的使用规则等；  　　（十六）省级以上财政部门规定的其他事项。  　　对于不允许偏离的实质性要求和条件，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招标文件中规定，并以醒目的方式标明。  　　第二十一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根据采购项目的特点和采购需求编制资格预审文件。资格预审文件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资格预审邀请；  　　（二）申请人须知；  　　（三）申请人的资格要求；  　　（四）资格审核标准和方法；  　　（五）申请人应当提供的资格预审申请文件的内容和格式；  　　（六）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方式、截止时间、地点及资格审核日期；  　　（七）申请人信用信息查询渠道及截止时点、信用信息查询记录和证据留存的具体方式、信用信息的使用规则等内容；  　　（八）省级以上财政部门规定的其他事项。  　　资格预审文件应当免费提供。  　　第二十二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一般不得要求投标人提供样品，仅凭书面方式不能准确描述采购需求或者需要对样品进行主观判断以确认是否满足采购需求等特殊情况除外。  　　要求投标人提供样品的，应当在招标文件中明确规定样品制作的标准和要求、是否需要随样品提交相关检测报告、样品的评审方法以及评审标准。需要随样品提交检测报告的，还应当规定检测机构的要求、检测内容等。  　　采购活动结束后，对于未中标人提供的样品，应当及时退还或者经未中标人同意后自行处理；对于中标人提供的样品，应当按照招标文件的规定进行保管、封存，并作为履约验收的参考。  　　第二十三条 投标有效期从提交投标文件的截止之日起算。投标文件中承诺的投标有效期应当不少于招标文件中载明的投标有效期。投标有效期内投标人撤销投标文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不退还投标保证金。  　　第二十四条 招标文件售价应当按照弥补制作、邮寄成本的原则确定，不得以营利为目的，不得以招标采购金额作为确定招标文件售价的依据。  　　第二十五条 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的内容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标准、政府采购政策，或者违反公开透明、公平竞争、公正和诚实信用原则。  　　有前款规定情形，影响潜在投标人投标或者资格预审结果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修改招标文件或者资格预审文件后重新招标。  　　第二十六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在招标文件提供期限截止后，组织已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现场考察或者召开开标前答疑会。  　　组织现场考察或者召开答疑会的，应当在招标文件中载明，或者在招标文件提供期限截止后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  　　第二十七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对已发出的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投标邀请书进行必要的澄清或者修改，但不得改变采购标的和资格条件。澄清或者修改应当在原公告发布媒体上发布澄清公告。澄清或者修改的内容为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投标邀请书的组成部分。  　　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投标文件编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投标截止时间至少15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15日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顺延提交投标文件的截止时间。  　　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资格预审申请文件编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截止时间至少3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资格预审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3日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顺延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截止时间。  　　第二十八条 投标截止时间前，采购人、采购代理机构和有关人员不得向他人透露已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的名称、数量以及可能影响公平竞争的有关招标投标的其他情况。  　　第二十九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在发布招标公告、资格预审公告或者发出投标邀请书后，除因重大变故采购任务取消情况外，不得擅自终止招标活动。  　　终止招标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及时在原公告发布媒体上发布终止公告，以书面形式通知已经获取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或者被邀请的潜在投标人，并将项目实施情况和采购任务取消原因报告本级财政部门。已经收取招标文件费用或者投标保证金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在终止采购活动后5个工作日内，退还所收取的招标文件费用和所收取的投标保证金及其在银行产生的孳息。  第三章　投　标  　　第三十条 投标人，是指响应招标、参加投标竞争的法人、其他组织或者自然人。  　　第三十一条 采用最低评标价法的采购项目，提供相同品牌产品的不同投标人参加同一合同项下投标的，以其中通过资格审查、符合性审查且报价最低的参加评标；报价相同的，由采购人或者采购人委托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方式确定一个参加评标的投标人，招标文件未规定的采取随机抽取方式确定，其他投标无效。  　　使用综合评分法的采购项目，提供相同品牌产品且通过资格审查、符合性审查的不同投标人参加同一合同项下投标的，按一家投标人计算，评审后得分最高的同品牌投标人获得中标人推荐资格；评审得分相同的，由采购人或者采购人委托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方式确定一个投标人获得中标人推荐资格，招标文件未规定的采取随机抽取方式确定，其他同品牌投标人不作为中标候选人。  　　非单一产品采购项目，采购人应当根据采购项目技术构成、产品价格比重等合理确定核心产品，并在招标文件中载明。多家投标人提供的核心产品品牌相同的，按前两款规定处理。  　　第三十二条 投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的要求编制投标文件。投标文件应当对招标文件提出的要求和条件作出明确响应。  　　第三十三条 投标人应当在招标文件要求提交投标文件的截止时间前，将投标文件密封送达投标地点。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收到投标文件后，应当如实记载投标文件的送达时间和密封情况，签收保存，并向投标人出具签收回执。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开标前开启投标文件。  　　逾期送达或者未按照招标文件要求密封的投标文件，采购人、采购代理机构应当拒收。  　　第三十四条 投标人在投标截止时间前，可以对所递交的投标文件进行补充、修改或者撤回，并书面通知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补充、修改的内容应当按照招标文件要求签署、盖章、密封后，作为投标文件的组成部分。  　　第三十五条 投标人根据招标文件的规定和采购项目的实际情况，拟在中标后将中标项目的非主体、非关键性工作分包的，应当在投标文件中载明分包承担主体，分包承担主体应当具备相应资质条件且不得再次分包。  　　第三十六条 投标人应当遵循公平竞争的原则，不得恶意串通，不得妨碍其他投标人的竞争行为，不得损害采购人或者其他投标人的合法权益。  　　在评标过程中发现投标人有上述情形的，评标委员会应当认定其投标无效，并书面报告本级财政部门。  　　第三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投标人串通投标，其投标无效：  　　（一）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由同一单位或者个人编制；  　　（二）不同投标人委托同一单位或者个人办理投标事宜；  　　（三）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载明的项目管理成员或者联系人员为同一人；  　　（四）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异常一致或者投标报价呈规律性差异；  　　（五）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相互混装；  　　（六）不同投标人的投标保证金从同一单位或者个人的账户转出。  　　第三十八条 投标人在投标截止时间前撤回已提交的投标文件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收到投标人书面撤回通知之日起５个工作日内，退还已收取的投标保证金，但因投标人自身原因导致无法及时退还的除外。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通知书发出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未中标人的投标保证金，自采购合同签订之日起5个工作日内退还中标人的投标保证金或者转为中标人的履约保证金。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逾期退还投标保证金的，除应当退还投标保证金本金外，还应当按中国人民银行同期贷款基准利率上浮20％后的利率支付超期资金占用费，但因投标人自身原因导致无法及时退还的除外。  第四章　开标、评标  　　第三十九条 开标应当在招标文件确定的提交投标文件截止时间的同一时间进行。开标地点应当为招标文件中预先确定的地点。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对开标、评标现场活动进行全程录音录像。录音录像应当清晰可辨，音像资料作为采购文件一并存档。  　　第四十条 开标由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主持，邀请投标人参加。评标委员会成员不得参加开标活动。  　　第四十一条 开标时，应当由投标人或者其推选的代表检查投标文件的密封情况；经确认无误后，由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工作人员当众拆封，宣布投标人名称、投标价格和招标文件规定的需要宣布的其他内容。  　　投标人不足3家的，不得开标。  　　第四十二条 开标过程应当由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负责记录，由参加开标的各投标人代表和相关工作人员签字确认后随采购文件一并存档。  　　投标人代表对开标过程和开标记录有疑义，以及认为采购人、采购代理机构相关工作人员有需要回避的情形的，应当场提出询问或者回避申请。采购人、采购代理机构对投标人代表提出的询问或者回避申请应当及时处理。  　　投标人未参加开标的，视同认可开标结果。  　　第四十三条 公开招标数额标准以上的采购项目，投标截止后投标人不足3家或者通过资格审查或符合性审查的投标人不足3家的，除采购任务取消情形外，按照以下方式处理：  　　（一）招标文件存在不合理条款或者招标程序不符合规定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改正后依法重新招标；  　　（二）招标文件没有不合理条款、招标程序符合规定，需要采用其他采购方式采购的，采购人应当依法报财政部门批准。  　　第四十四条 公开招标采购项目开标结束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依法对投标人的资格进行审查。  合格投标人不足3家的，不得评标。  　　第四十五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负责组织评标工作，并履行下列职责：  　　（一）核对评审专家身份和采购人代表授权函，对评审专家在政府采购活动中的职责履行情况予以记录，并及时将有关违法违规行为向财政部门报告；  　　（二）宣布评标纪律；  　　（三）公布投标人名单，告知评审专家应当回避的情形；  　　（四）组织评标委员会推选评标组长，采购人代表不得担任组长；  　　（五）在评标期间采取必要的通讯管理措施，保证评标活动不受外界干扰；  　　（六）根据评标委员会的要求介绍政府采购相关政策法规、招标文件；  　　（七）维护评标秩序，监督评标委员会依照招标文件规定的评标程序、方法和标准进行独立评审，及时制止和纠正采购人代表、评审专家的倾向性言论或者违法违规行为；  （八）核对评标结果，有本办法第六十四条规定情形的，要求评标委员会复核或者书面说明理由，评标委员会拒绝的，应予记录并向本级财政部门报告；  　　（九）评审工作完成后，按照规定向评审专家支付劳务报酬和异地评审差旅费，不得向评审专家以外的其他人员支付评审劳务报酬；  　　（十）处理与评标有关的其他事项。  　　采购人可以在评标前说明项目背景和采购需求，说明内容不得含有歧视性、倾向性意见，不得超出招标文件所述范围。说明应当提交书面材料，并随采购文件一并存档。  　　第四十六条 评标委员会负责具体评标事务，并独立履行下列职责：  　　（一）审查、评价投标文件是否符合招标文件的商务、技术等实质性要求；  　　（二）要求投标人对投标文件有关事项作出澄清或者说明；  　　（三）对投标文件进行比较和评价；  　　（四）确定中标候选人名单，以及根据采购人委托直接确定中标人；  　　（五）向采购人、采购代理机构或者有关部门报告评标中发现的违法行为。  　　第四十七条 评标委员会由采购人代表和评审专家组成，成员人数应当为5人以上单数，其中评审专家不得少于成员总数的三分之二。  　　采购项目符合下列情形之一的，评标委员会成员人数应当为7人以上单数：  　　（一）采购预算金额在1000万元以上；  　　（二）技术复杂；  　　（三）社会影响较大。  　　评审专家对本单位的采购项目只能作为采购人代表参与评标，本办法第四十八条第二款规定情形除外。采购代理机构工作人员不得参加由本机构代理的政府采购项目的评标。  　　评标委员会成员名单在评标结果公告前应当保密。  　　第四十八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从省级以上财政部门设立的政府采购评审专家库中，通过随机方式抽取评审专家。  　　对技术复杂、专业性强的采购项目，通过随机方式难以确定合适评审专家的，经主管预算单位同意，采购人可以自行选定相应专业领域的评审专家。  　　第四十九条 评标中因评标委员会成员缺席、回避或者健康等特殊原因导致评标委员会组成不符合本办法规定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依法补足后继续评标。被更换的评标委员会成员所作出的评标意见无效。  　　无法及时补足评标委员会成员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停止评标活动，封存所有投标文件和开标、评标资料，依法重新组建评标委员会进行评标。原评标委员会所作出的评标意见无效。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将变更、重新组建评标委员会的情况予以记录，并随采购文件一并存档。  　　第五十条 评标委员会应当对符合资格的投标人的投标文件进行符合性审查，以确定其是否满足招标文件的实质性要求。  　　第五十一条 对于投标文件中含义不明确、同类问题表述不一致或者有明显文字和计算错误的内容，评标委员会应当以书面形式要求投标人作出必要的澄清、说明或者补正。  　　投标人的澄清、说明或者补正应当采用书面形式，并加盖公章，或者由法定代表人或其授权的代表签字。投标人的澄清、说明或者补正不得超出投标文件的范围或者改变投标文件的实质性内容。  　　第五十二条 评标委员会应当按照招标文件中规定的评标方法和标准，对符合性审查合格的投标文件进行商务和技术评估，综合比较与评价。  　　第五十三条 评标方法分为最低评标价法和综合评分法。  　　第五十四条 最低评标价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投标报价最低的投标人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  　　技术、服务等标准统一的货物服务项目，应当采用最低评标价法。  　　采用最低评标价法评标时，除了算术修正和落实政府采购政策需进行的价格扣除外，不能对投标人的投标价格进行任何调整。  　　第五十五条 综合评分法，是指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按照评审因素的量化指标评审得分最高的投标人为中标候选人的评标方法。  　　评审因素的设定应当与投标人所提供货物服务的质量相关，包括投标报价、技术或者服务水平、履约能力、售后服务等。资格条件不得作为评审因素。评审因素应当在招标文件中规定。  　　评审因素应当细化和量化，且与相应的商务条件和采购需求对应。商务条件和采购需求指标有区间规定的，评审因素应当量化到相应区间，并设置各区间对应的不同分值。  　　评标时，评标委员会各成员应当独立对每个投标人的投标文件进行评价，并汇总每个投标人的得分。  货物项目的价格分值占总分值的比重不得低于30%；服务项目的价格分值占总分值的比重不得低于10%。执行国家统一定价标准和采用固定价格采购的项目，其价格不列为评审因素。  　　价格分应当采用低价优先法计算，即满足招标文件要求且投标价格最低的投标报价为评标基准价，其价格分为满分。其他投标人的价格分统一按照下列公式计算：  　　投标报价得分=(评标基准价／投标报价)×100  　　评标总得分＝F1×A1＋F2×A2＋……＋Fn×An  　　F1、F2……Fn分别为各项评审因素的得分；  　　A1、A2、……An 分别为各项评审因素所占的权重(A1＋A2＋……＋An＝1)。  　　评标过程中，不得去掉报价中的最高报价和最低报价。  　　因落实政府采购政策进行价格调整的，以调整后的价格计算评标基准价和投标报价。  　　第五十六条 采用最低评标价法的，评标结果按投标报价由低到高顺序排列。投标报价相同的并列。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投标报价最低的投标人为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  　　第五十七条 采用综合评分法的，评标结果按评审后得分由高到低顺序排列。得分相同的，按投标报价由低到高顺序排列。得分且投标报价相同的并列。投标文件满足招标文件全部实质性要求，且按照评审因素的量化指标评审得分最高的投标人为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  　　第五十八条 评标委员会根据全体评标成员签字的原始评标记录和评标结果编写评标报告。评标报告应当包括以下内容：  　　（一）招标公告刊登的媒体名称、开标日期和地点；  　　（二）投标人名单和评标委员会成员名单；  　　（三）评标方法和标准；  　　（四）开标记录和评标情况及说明，包括无效投标人名单及原因；  　　（五）评标结果，确定的中标候选人名单或者经采购人委托直接确定的中标人；  　　（六）其他需要说明的情况，包括评标过程中投标人根据评标委员会要求进行的澄清、说明或者补正，评标委员会成员的更换等。  　　第五十九条 投标文件报价出现前后不一致的，除招标文件另有规定外，按照下列规定修正：  　　（一）投标文件中开标一览表（报价表）内容与投标文件中相应内容不一致的，以开标一览表（报价表）为准；  　　（二）大写金额和小写金额不一致的，以大写金额为准；  　　（三）单价金额小数点或者百分比有明显错位的，以开标一览表的总价为准，并修改单价；  　　（四）总价金额与按单价汇总金额不一致的，以单价金额计算结果为准。  　　同时出现两种以上不一致的，按照前款规定的顺序修正。修正后的报价按照本办法第五十一条第二款的规定经投标人确认后产生约束力，投标人不确认的，其投标无效。  　　第六十条 评标委员会认为投标人的报价明显低于其他通过符合性审查投标人的报价，有可能影响产品质量或者不能诚信履约的，应当要求其在评标现场合理的时间内提供书面说明，必要时提交相关证明材料；投标人不能证明其报价合理性的，评标委员会应当将其作为无效投标处理。  　　第六十一条 评标委员会成员对需要共同认定的事项存在争议的，应当按照少数服从多数的原则作出结论。持不同意见的评标委员会成员应当在评标报告上签署不同意见及理由，否则视为同意评标报告。  　　第六十二条 评标委员会及其成员不得有下列行为：  　　（一）确定参与评标至评标结束前私自接触投标人；  　　（二）接受投标人提出的与投标文件不一致的澄清或者说明，本办法第五十一条规定的情形除外；  　　（三）违反评标纪律发表倾向性意见或者征询采购人的倾向性意见；  　　（四）对需要专业判断的主观评审因素协商评分；  　　（五）在评标过程中擅离职守，影响评标程序正常进行的；  　　（六）记录、复制或者带走任何评标资料；  　　（七）其他不遵守评标纪律的行为。  评标委员会成员有前款第一至五项行为之一的，其评审意见无效，并不得获取评审劳务报酬和报销异地评审差旅费。  　　第六十三条 投标人存在下列情况之一的，投标无效:  　　（一）未按照招标文件的规定提交投标保证金的；  　　（二）投标文件未按招标文件要求签署、盖章的；  　　（三）不具备招标文件中规定的资格要求的；  　　（四）报价超过招标文件中规定的预算金额或者最高限价的；  　　（五）投标文件含有采购人不能接受的附加条件的;  　　（六）法律、法规和招标文件规定的其他无效情形。  　　第六十四条 评标结果汇总完成后，除下列情形外，任何人不得修改评标结果：  　　（一）分值汇总计算错误的；  　　（二）分项评分超出评分标准范围的；  　　（三）评标委员会成员对客观评审因素评分不一致的；  　　（四）经评标委员会认定评分畸高、畸低的。  评标报告签署前，经复核发现存在以上情形之一的，评标委员会应当当场修改评标结果，并在评标报告中记载；评标报告签署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发现存在以上情形之一的，应当组织原评标委员会进行重新评审，重新评审改变评标结果的，书面报告本级财政部门。  　　投标人对本条第一款情形提出质疑的，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可以组织原评标委员会进行重新评审，重新评审改变评标结果的，应当书面报告本级财政部门。  　　第六十五条 评标委员会发现招标文件存在歧义、重大缺陷导致评标工作无法进行，或者招标文件内容违反国家有关强制性规定的，应当停止评标工作，与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沟通并作书面记录。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确认后，应当修改招标文件，重新组织采购活动。  　　第六十六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应当采取必要措施，保证评标在严格保密的情况下进行。除采购人代表、评标现场组织人员外，采购人的其他工作人员以及与评标工作无关的人员不得进入评标现场。  　　有关人员对评标情况以及在评标过程中获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负有保密责任。  　　第六十七条 评标委员会或者其成员存在下列情形导致评标结果无效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可以重新组建评标委员会进行评标，并书面报告本级财政部门，但采购合同已经履行的除外：  　　（一）评标委员会组成不符合本办法规定的；  　　（二）有本办法第六十二条第一至五项情形的；  （三）评标委员会及其成员独立评标受到非法干预的；  　　（四）有政府采购法实施条例第七十五条规定的违法行为的。  　　有违法违规行为的原评标委员会成员不得参加重新组建的评标委员会。  第五章　中标和合同  　　第六十八条 采购代理机构应当在评标结束后2个工作日内将评标报告送采购人。  　　采购人应当自收到评标报告之日起５个工作日内，在评标报告确定的中标候选人名单中按顺序确定中标人。中标候选人并列的，由采购人或者采购人委托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方式确定中标人；招标文件未规定的，采取随机抽取的方式确定。  　　采购人自行组织招标的，应当在评标结束后5个工作日内确定中标人。  　　采购人在收到评标报告5个工作日内未按评标报告推荐的中标候选人顺序确定中标人，又不能说明合法理由的，视同按评标报告推荐的顺序确定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为中标人。  　　第六十九条 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自中标人确定之日起2个工作日内，在省级以上财政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中标结果，招标文件应当随中标结果同时公告。  　　中标结果公告内容应当包括采购人及其委托的采购代理机构的名称、地址、联系方式，项目名称和项目编号，中标人名称、地址和中标金额，主要中标标的的名称、规格型号、数量、单价、服务要求，中标公告期限以及评审专家名单。  　　中标公告期限为1个工作日。  　　邀请招标采购人采用书面推荐方式产生符合资格条件的潜在投标人的，还应当将所有被推荐供应商名单和推荐理由随中标结果同时公告。  　　在公告中标结果的同时，采购人或者采购代理机构应当向中标人发出中标通知书；对未通过资格审查的投标人，应当告知其未通过的原因；采用综合评分法评审的，还应当告知未中标人本人的评审得分与排序。  　　第七十条 中标通知书发出后，采购人不得违法改变中标结果，中标人无正当理由不得放弃中标。  　　第七十一条 采购人应当自中标通知书发出之日起30日内，按照招标文件和中标人投标文件的规定，与中标人签订书面合同。所签订的合同不得对招标文件确定的事项和中标人投标文件作实质性修改。  　　采购人不得向中标人提出任何不合理的要求作为签订合同的条件。  　　第七十二条 政府采购合同应当包括采购人与中标人的名称和住所、标的、数量、质量、价款或者报酬、履行期限及地点和方式、验收要求、违约责任、解决争议的方法等内容。  　　第七十三条 采购人与中标人应当根据合同的约定依法履行合同义务。  　　政府采购合同的履行、违约责任和解决争议的方法等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第七十四条 采购人应当及时对采购项目进行验收。采购人可以邀请参加本项目的其他投标人或者第三方机构参与验收。参与验收的投标人或者第三方机构的意见作为验收书的参考资料一并存档。  　　第七十五条 采购人应当加强对中标人的履约管理，并按照采购合同约定，及时向中标人支付采购资金。对于中标人违反采购合同约定的行为，采购人应当及时处理，依法追究其违约责任。  　　第七十六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应当建立真实完整的招标采购档案，妥善保存每项采购活动的采购文件。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十七条 采购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给予警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行政主管部门或者有关机关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一）未按照本办法的规定编制采购需求的；  　　（二）违反本办法第六条第二款规定的；  　　（三）未在规定时间内确定中标人的；  　　（四）向中标人提出不合理要求作为签订合同条件的。  　　第七十八条 采购人、采购代理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给予警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其行政主管部门或者有关机关给予处分，并予通报；采购代理机构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可以处以不超过违法所得3倍、最高不超过3万元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以1万元以下的罚款：  　　（一）违反本办法第八条第二款规定的；  　　（二）设定最低限价的；  　　（三）未按照规定进行资格预审或者资格审查的；  　　（四）违反本办法规定确定招标文件售价的；  　　（五）未按规定对开标、评标活动进行全程录音录像的；  　　（六）擅自终止招标活动的；  　　（七）未按照规定进行开标和组织评标的；  　　（八）未按照规定退还投标保证金的；  　　（九）违反本办法规定进行重新评审或者重新组建评标委员会进行评标的；  　　（十）开标前泄露已获取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的名称、数量或者其他可能影响公平竞争的有关招标投标情况的；  　　（十一）未妥善保存采购文件的；  　　（十二）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情形。  　　第七十九条 有本办法第七十七条、第七十八条规定的违法行为之一，经改正后仍然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结果的，依照政府采购法实施条例第七十一条规定处理。  　　第八十条　政府采购当事人违反本办法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八十一条 评标委员会成员有本办法第六十二条所列行为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给予警告，并对其不良行为予以记录。  　　第八十二条 财政部门应当依法履行政府采购监督管理职责。财政部门及其工作人员在履行监督管理职责中存在懒政怠政、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违纪行为的，依照政府采购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政府采购法实施条例等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第七章　附　则  　　第八十三条 政府采购货物服务电子招标投标、政府采购货物中的进口机电产品招标投标有关特殊事宜，由财政部另行规定。  　　第八十四条 本办法所称主管预算单位是指负有编制部门预算职责，向本级财政部门申报预算的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  　　第八十五条 本办法规定按日计算期间的，开始当天不计入，从次日开始计算。期限的最后一日是国家法定节假日的，顺延到节假日后的次日为期限的最后一日。  　　第八十六条 本办法所称的“以上”、“以下”、“内”、“以内”，包括本数；所称的“不足”，不包括本数。  　　第八十七条 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可以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  　　第八十八条 本办法自2017年10月1日起施行。财政部2004年8月11日发布的《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财政部令第18号）同时废止。 |